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  
도시·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2년 11월 4일
- 나. 제안자: 김순옥 의원 외 14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1. 23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순옥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, 구조,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- 나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
다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
라.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
마. 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조부서: 안전관리과

라. 입법예고(2022. 11. 7. ~ 11. 14.) 결과: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제정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<sup>1)</sup>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, 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‘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--

1) 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(이하 “소방업무”라 한다)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  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  
④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 
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 2017. 7. 26.>

## 나. 주요 제정내용

### ○ 지원범위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- 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수행하고 있는 재난 현장 소방업무 보조 역할 등을 고려하여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#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이는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sup>2)</sup>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.

### ○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사항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- 지방보조금의 사용 내역이 불법·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확인 될 경우, 지원 중단 및 반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 ○ 의용소방대원 표창 근거 명시(안 제7조)

-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을 「서울 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.

2) 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다. 종합 의견

-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·구호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선의 소방조직으로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되며,
  -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.(의용소방대법 제16조 각주 2번 참조)
-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, 소방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특별시장,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,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.

### 〈의용소방대 지원 관련 법령 주요 내용〉

구분	법	규칙	서울시조례
경비 부담	제14조		제21조
소집 수당	제15조	제19조	제16조
활동비 지원	제16조		
재해보상 등	제17조	제21조	제18조
장학금 지원			제19조
포상		제20조	제17조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# 참 고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현황

## □ 인원현황

(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제공, 2022. 10월말 기준)

계		혼성대		여성대		전문대		지역대	
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
220	220	40	40	40	40	20	20	120	120

### ○ 지역대 세부 현황

등촌대		화곡대		발산대		방화대		개화대		마곡대	
정원	현원										
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

※ 현재 신규 모집 중에 있음

## □ 예산현황

(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제공, 2022. 10월말 기준)

계	의용소방대 지원경비		
	소집수당	여비	피복비
97,908천원	71,640천원	14,328천원	11,940천원

※ 25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정원에 비례하여 차등 분배함

## □ 서울시 타구 조례제정 현황

연번	자치구명	구분	종류	공포번호	공포일	시행일
1	강남구	제정	조례	제1693호	2022. 5. 6.	2022. 5. 6.
2	강동구	제정	조례	제1694호	2022. 5.11.	2022. 5.11.
3	강북구	제정	조례	제1595호	2022.11. 4.	2022.11. 4.
4	관악구	제정	조례	제1363호	2021. 7. 8.	2021. 7. 8.
5	광진구	제정	조례	제1293호	2022.10.17.	2022.10.17.
6	노원구	제정	조례	제1661호	2022.10.27.	2022.10.27.
7	동작구	제정	조례	제1672호	2022. 5. 6.	2022. 5. 6.
8	용산구	제정	조례	제1495호	2022.10.21.	2022.10.21.
9	중 구	제정	조례	제1543호	2021. 1.11.	2021. 1.11.

**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